

장안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25년 6월 9일
재석의원 11명	참여의원 7명

1. 일 시 : 2025년 6월 17(화) 14시 00분
2. 장 소 : 대학본부 3층 하나홀
3. 참석의원 : 서정석, 홍사욱, 천정진, 이언영, 정미선, 임이철, 조아빈
4. 불참의원 : 해주영, 이종윤, 이용현
5. 기타 참석자 : 기획처장 홍정화, 교무처장 류경희

6. 안 건

연번	안 건 명
1	중장기발전계획 변경(안) 심의
2	학칙 개정(안) 심의
3	장안대학교 헌장 개정(안) 자문

7. 회의내용

간사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해서 재석 위원 11명중 7명 참석하여 과반수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안내하다.

의장 (서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 (서정석) 안건 1. 중장기발전계획 변경(안) 심의에 대하여 상정하다.

기 타 참 석 자 (홍정화) 중장기 발전계획 변경(안)의 변경취지는
 ① 학령인구 감소, 사회적 요구 변화 등 대학의 내외부 환경 급변에 대비하고,
 ②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자 준비하였음을 설명하다.

위원들 중장기발전계획의 세부내용에 논의하며 질문하고,
 기타참석자 홍정화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하다.

의장 (서정석) 제1호 안건 중장기발전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서 거수하여 의견을 묻다.

위원 전원 거수하여 찬성하다.

의장 (서정석) 제1호 안건 중장기발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은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학칙개정(안) 심의 건을 상정하다.

<간서명>	서정석	홍사욱	천정진	조아빈
-------	-----	-----	-----	-----

기 타 참 석 자 학칙 개정(안) 대하여 설명하다.

(류경희) 주요내용은

- ① 다양한 전공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과 가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 ② 외부 협약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학점 인정 근거를 추가하고 학점 인정 범위 확대
- ③ 위탁교육생 모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업체 위탁 교육 계약에 필요한 사항 개정 임을 설명하다

위원들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질문하고 기타참석자 류경희 질문에 대하여 답하다.

의장 (서정석) 제2호 안건인 학칙 개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거수하여 의견을 묻다.

위원 전원 거수하여 찬성하다.

의장 (서정석) 제2호 안건 학칙 개정안 심의 건은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리며 제3호 안건인 장안대학교 현장 개정(안) 자문 건을 상정하다.

기 타 참 석 자 장안대학교 현장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홍정화)

의원 (홍사욱) 내용의 문제가 없으나 문맥상 변경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문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위원들 장안대학교 헌정 개정(안) 중 자문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다.

의장 (서정석) 제3호 안건인 장안대학교 현장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 의견이 수렴되었음을 알리다.

- 1. 전문 중 '홍익인간의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대한민국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 2. 제1조(건학이념) 중 '홍익인간의 대한민국 교육이념과'를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로 내용 수정을 권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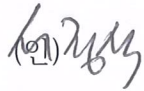
의장 (서정석)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0조(회의록)에 의하여 간인 서명 의원으로 홍사욱의원, 정미선 의원, 조아빈 의원을 지명하다.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4시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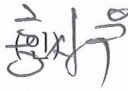
위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간서명>	서정석	홍사욱	정미선	조아빈
-------	-----	-----	-----	-----

의 장

서 정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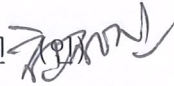
부 의 장

홍 사 옥 

평 의 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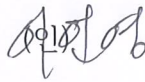
평 의 원

천 정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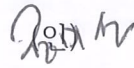
평 의 원

하 주 영 (인)

평 의 원

이 언 영 


평 의 원

정 미 선 

평 의 원

임 이 철 

평 의 원

조 아 빈 

평 의 원

이 종 윤 (인)

평 의 원

이 용 현 (인)

2025. 5. 17.

장 안 대 학 교 대 학 평 의 원 회

2025학년도 제2회 대학평의원회 안건

연번	안 건 명
1	중장기발전계획 변경(안) 심의
2	학칙 개정(안) 심의
3	장안대학교 헌장 개정(안) 자문

2025. 6. 17.



제 1호 안건 **중장기 발전계획 변경(안) 심의**

□ 의결 안건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변경 승인

□ 변경 취지

- 학령인구 감소, 사회적 요구 변화 등 대학의 내외부 환경 급변에 대비
-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

□ 추진 경과

- 2017년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JUMP PLUS 2025」 수립 시행
- 2023년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Renewal 2030」 수립 시행
- 2025년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Vision 2035」 수립

연번	일자	주요내용	비고
1	2월 21일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혁신방안 수립	
2	3월 14일	중장기 발전계획 TFT 전문위원 위촉	
3	4월 2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 구성원 설문조사 실시	
4	4월 10일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보고	
5	6월 10일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공청회	온라인 병행
6	6월 20일(예정)	VISION 2035 중장기 발전계획 선포식	

□ 주요 내용



4대 영역	6대 전략과제	35개 실행과제	
1	1.1 교육역량 강화	1.1.1	학과별 경쟁력 평가 및 특성화 기반의 학사 구조 혁신
		1.1.2	핵심역량 및 직무능력 진단을 통한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 내실화
		1.1.3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학사제도 유연화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2	1.2 학생지원 강화	1.1.4	전공선택권 강화를 위한 자유전공 확대 및 커리큘럼 정교화
		1.1.5	AI 융합형 마이크로디그리 확대
		1.1.6	취창업 역량 강화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3	1.3 글로벌 캠퍼스 조성	1.1.7	단기집중형 교육과정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1.1.8	교수 역량 향상 프로그램 강화 (최신 교수학습법)
		1.2.1	예비 신입생 대상 기초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
4	2.1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1.2.2	신입생 이탈 방지 프로그램 기획 강화
		1.2.3	중도탈락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4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전주기적 학생 지원 체계 고도화
5	3.1 지산학 협력 확대	1.3.1	해외 교육기관 협약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모집 국가 다변화
		1.3.2	외국인 유학생 윈스톰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주 지원체계 강화
		1.3.3	우수학생 대상 해외 취업 프로그램 확대
6	4.1 대학경영 고도화	2.1.1	디지털전환 중점 전문대학 실현 (AI + DX)
		2.1.2	실무 중심의 1인 1자격증 프로그램 내재화
		2.1.3	보건계열 강화를 위한 간호보건대학 신설
7	4.1 대학경영 고도화	2.1.4	융복합 예술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고도화
		3.1.1	산학협력 연계 및 기업설계형 교육과정 정교화 (교과/비교과 포함)
		3.1.2	산업체 지자체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AI 교육 등)
8	4.1 대학경영 고도화	3.1.3	지산학 협업 기반 지역 밀착형 PBL(문제해결학습) 교육 체계 강화
		3.1.4	고교-대학-산업 연계 일체형 교육과정 도입
		3.1.5	지산학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
9	4.1 대학경영 고도화	3.1.6	지산학 공동 프로젝트 강화
		3.1.7	가족회사 확대 및 등급 체계 도입
		3.1.8	산업체 및 기관 입주 추진
10	4.1 대학경영 고도화	4.1.1	타 대학지역과의 공유협력모델 강화
		4.1.2	수익사업 및 발전기금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4.1.3	외부연구과제 수주·관리 지원 체계 구축
11	4.1 대학경영 고도화	4.1.4	대학 이미지 및 입시 홍보 고도화
		4.1.5	데이터 기반의 대학 성과관리 체계 구축 (R센터)
		4.1.6	차등적 교원 보상체계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
12	4.1 대학경영 고도화	4.1.7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행정 아카데미 운영
		4.1.8	교육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및 제도 개선

※ 세부내용 별도 첨부

제 2호 안건 **학칙 개정(안) 심의**

□ 의결 안건

- 학칙 개정(안) 심의 요청

□ 개정 취지

- 다양한 전공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과 가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 외부 협약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학점 인정 근거를 추가하고 학점 인정 범위 확대
- 위탁교육생 모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업체 위탁 교육 계약에 필요한 사항 개정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유
제1조 ~ 제27조(생략)	제1조 ~ 제27조(현행과 같음)	
제28조(전과) ① 교내 전과,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학과에 관계없이 1학년 1학기, 2학기 개시일부터 4주 이내와 2학년 1학기 개시일부터 4주 이내에 <u>1회에</u>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5.17.)	제28조(전과) ① 교내 전과,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학과에 관계없이 1학년 1학기, 2학기 개시일부터 4주 이내와 2학년 1학기 개시일부터 4주 이내에 <u>2회에</u>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5.17.), (개정 2025. 00. 00.)	다양한 전공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 횟수 확대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 ~ 제35조(생략)	제28조 ~ 제35조(현행과 같음)	
제36조(학점인정) ① (생략) ② <u>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u> 행한 교육·연구·실습·자격취득·근무경험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0% 범위 안에서 관련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u>재학생단계 입학성행과정과 관련하여 전공교과를</u> 이수한 경우 이를 다르	제36조(학점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학교·연구기관·산업체·외부 협약기관 등에서</u> 행한 교육·연구·실습·자격취득·근무경험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0% 범위 안에서 관련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u>본교 운영기관 및 외부 협약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u>	외부 협약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학점 인정 근거를 추가하고, 학점 인정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p> <p>③ ~ ⑩ (생략)</p> <p>제37조 ~ 제56조(생략)</p> <p>제57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의뢰 받아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u>위탁교육생 선발기준, 위탁교육경비의 부담 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을 갖춘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③ 산업체위탁생의 모집계획 및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제58조 ~ 제96조(생략)</p> <p><신설></p>	<p><u>그랩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인정 범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u> (개정 2024. 9. 3.)(개정 2025. 00. 00.)</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p>제37조 ~ 제56조(현행과 같음)</p> <p>제57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의뢰 받아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u>위탁교육생 선발기준, 위탁교육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교수자격을 갖춘 자의 활용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개정 2025. 00. 00.)</p> <p>③ 산업체위탁생의 모집계획 및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제58조 ~ 제96조(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p>위탁교육생 모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업체 위탁 교육 계약에 필요한 사항 개정</p>

제 3호 안건 장안대학교 헌장 개정(안) 자문

□ 의결 안건

- 헌장 개정(안) 심의

□ 개정 취지

- 설립인가서 및 초기자료 검증으로 내용 수정 / 오류 정정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전 문</p> <p>홍익인간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1979년 설립된 장안대학교는 자아실현을 교훈으로 학식과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u>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며, 전문적인 이론과 실험실습 교육으로 창의력을 계발하여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배출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헌장을 제정한다.</u></p> <p>제1조(건학이념) 학교법인 서림학원이 설립한 장안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p> <p>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품격, 전문직업인으로서 능력, 직업소명을 다하는 열정을 갖춘 프로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전 문</p> <p>홍익인간의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1979년 설립된 장안대학교는 자아실현을 교훈으로 학식과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u>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며, 전문적인 이론과 실험실습 교육으로 창의력을 계발하여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배출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헌장을 제정한다.</u></p> <p>제1조(건학이념) 학교법인 서림학원은 홍익인간의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자아실현의 교훈 아래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설하고 유능한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안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를 설립하였다.</p> <p>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자아실현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의 산업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건설하고 유능한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성업(教育聖業)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설립인가서 및 개교 초기 자료 검증으로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명확한 출처 표기 및 문장 간소화, 초기 자료 반영 단어 수정</p> <p>설립인가서 및 초기 자료 검증으로 건학이념(설립이념) 오류 정정</p> <p>1979년 개교시 교육이념과 교육 목표를 반영하여 문장 재구성</p>

<p>① <u>학식과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u></p> <p>② 전문적인 이론과 실험실습교육으로 창의력을 <u>개발하여 현대의 고도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u></p> <p>제3조~제17조 (생략)</p> <p>부칙 <공포일 2005년 3월 1일> 이 헌장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이 헌장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① <u>학식과 인성을 균형있게 함양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u></p> <p>② 전문적인 이론과 실험실습교육으로 창의력을 <u>계발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u></p> <p>제3조~제17조 (현행과 같음)</p> <p>부칙 <공포일 2005년 3월 1일> 이 헌장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이 헌장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이 헌장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p>단어수정</p> <p>현대 사회의 특징을 기술하는 명칭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대비 단 어 수정</p>
---	---	--